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년월일 : 1994.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정이유

- 도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 또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장애 또는 상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의원상해등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 의원상해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따로 붙임)

조례(안) : 따로 붙임

기타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도 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중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의 간사) ①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 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 상 금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 결 정 >				
	< 결정이유 >				
심 의 결 과	< 심의위원 서명 >				
<p>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장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 기타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91. 6. 21 총무처 훈령 제153호)

①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②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시간의 시작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행사중 발생한 재해

③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 분진, 광선, 유해물질 등 근무장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④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⑤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 개정 91. 4. 2 > 폐질등급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1 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용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 13 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 14 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2이상 폐질상태에 대한 종합폐질 등급표

폐질등급 (1) \ 폐질등급 (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주) 폐질등급 (1) 에 해당하는 등급과 폐질등급 (2) 에 해당하는 등급 이 상호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폐질등급으로 한다.

(예) 폐질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부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는 이 표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이 5급으로 된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